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53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황운하 · 노종면 · 송옥주
임호선 · 이해민 · 신장식
서왕진 · 한정애 · 최혁진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제9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중 “제32조제5항”을 각각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4호의3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이용자 보호) ①·② (생략) <u><신 설></u>	제32조(이용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 ⑥</u> (생략)	<u>④ ~ ⑦</u>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u>⑦</u> 제2항부터 <u>제6항</u> 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⑧</u> ----- <u>제7항</u> ----- ----- ----- ----- ----- -----.
제33조(<u>손해배상</u>) ① 전기통신사	제33조(<u>손해배상 등</u>) ① -----

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
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
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3항에 따른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
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6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 12.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제5항-----

9의2. 제32조제6항-----

9의3. 제32조제6항-----

10. ~ 12.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 자 4의4. ~ 4의7. (생략) 5. ~ 17. (생략) ⑥ (생략)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32조제4항----- ----- ----- 4의4. ~ 17. (현행과 같음) 5.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